

『프랜차이즈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19.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1.10.07.

〈차 례〉

I . 통계작성 기획	1
II . 통계설계	5
III . 자료수집	15
IV . 통계처리 및 분석	33
V .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44
VI . 통계기반 및 개선	56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프랜차이즈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법론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 통계작성 기획

1. 통 계 명

프랜차이즈조사(승인번호 : 제101089호)

2.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통계청 /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3.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승인 통계

4.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이 원칙
 - 사업체에서 원하는 경우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및 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

5.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 1년(매년)
- 공표주기 : 1년(매년)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조사업무 흐름도

단계	업무	추진내용	일정	관련부서
조사 준비	실시계획수립	- 조사모집단 정비 - 세부추진계획 수립	2월 4~5월	산업통계과
	명부작성	- 표본설계 및 추출 - 조사명부 작성	4월 5월	표본과 산업통계과
	자료입력· 처리시스템구축	입력, 인터넷조사 시스템, 내검, 집계 등	1~6월	조사시스템 관리과
	조사표류 설계 및 인쇄	- 조사표 마련 및 의견수렴 - 조사표확정 - 조사지침서 등 작성 - 조사표류 등 인쇄	2~3월 4월 5~6월 5~6월	산업통계과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조사원 모집 - 단계별 교육 실시 - 1단계: 교관단 교육 - 2단계: 조사원 교육	6월 6월 6~7월	지방청 산업통계과 지방청
본조사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 조사실시 - 실사지도	7. 6.~ 8. 14.	산업통계과
자료 처리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조사표 입력 및 현지내검	7~8월	지방청
	자료처리 및 모집단 구축	- 업종별, 항목별, 지역별 등 종합내검 및 질의조회 - 공정위·지자체 정보공개서 가맹점 리스트 입수 (사후모집단 구축)	8월 ~'21. 1월 9~11월	산업통계과
결과 공표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 - 확정결과 공표 - 보고서 발간	12월 '21. 1월 '21. 2월	산업통계과

7.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세부추진계획

- 2019년 기준 프랜차이즈조사 추진계획(안) 보고(2020.5.25.)

☐ 업무편람

- 담당자용 통계작성 매뉴얼 작성(2020.7.)
 - 담당자 교체시 자료수집, 자료방법 등 인수인계

8. 통계연혁

☐ 최초 개발 시기

- 서비스업조사에 포함하여 2013년에 처음 실시

☐ 개발 배경

- 서민들의 주요 창업 수단인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필요성

☐ 변경 또는 개편 이력

- 2016년 경제총조사에 프랜차이즈 항목을 추가하여 전수조사 실시
- 2017년 공정위 정보공개서 가맹점리스트 입수로 모집단 구축 및 통계작성
- 2018년까지 서비스업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다가, 2019년에 별도의 국가승인통계로 분리하여 전수조사 실시
- 2020년에 약 2.5만개 표본조사 실시(모집단: 공정위 정보공개서 입수자료)

9. 통계의 작성목적

☐ 작성목적

- 서민들의 주요 창업 수단인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 및 창업희망자 지원

☐ 주된 활용분야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자료
-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연구활동 자료
-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창업희망자 정보제공

10.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조사결과 주요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 프랜차이즈산업 진흥 및 활성화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현황 확인 및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관계 등에 관한 정책자료로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에 활용

☐ 주요이용자 관리 유무 및 관리 방법

- 이용자그룹 협의체 명단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매년 초 변동사항 반영하여 명단 최신화

11. 이용자 의견수렴

□ 조사항목 의견 수렴

- 2019년 기준 프랜차이즈조사 조사항목 개선 관련 의견수렴('20.3.13.~3.19.)
 - (정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 (학계 및 관련기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 (의견수렴 내용) 조사항목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조사항목 관련 의견수렴 결과>

조사항목	변경(안)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문18 사업실적(2) (1) 로열티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조사항목 삭제	<의견내용> 로열티 방식에 대한 현황조사 필요. 로열티 부담 방식만 확인하거나 사업실적 비용부문에 계산 <검토결과-미반영> 응답자의 계약상 비밀,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불응 등 조사 불가 사유 다수 발생
-문18 사업실적(2) (2) 재료매입비(필수품목)	필수품목 문구 제외 및 사업실적(1) 영업 비용으로 이동	<의견내용> 재료매입비를 본사와 그 외로 구분하여 질문 필요. 영업비용 중 가맹본부에 지급한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필요 <검토결과-미반영> “재료매입비”는 문17 사업실적-매출원가에 반영

II. 통계설계

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

1-1 조사항목

☐ 조사항목 체계

일반현황 (6개)	사업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프랜차이즈 관련 항목 (4개)	브랜드명, 가맹점명, 가맹사업 시작연월,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경영실적 (6개)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사업실적
업종별 특성항목 (2개)	사업체 건물 연면적, 객석수

☐ 항목별 조사목적

조사항목	조사목적
사업체명, 가맹점명, 대표자명	사업체 누락 또는 중복여부를 확인
브랜드명	사업체 누락 또는 중복여부를 확인 브랜드 대표 산업분류 검토
소재지	지역 단위 통계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직영점, 가맹본부 여부 검토
사업의 종류	업종별 경제구조의 분포추이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종사자수	종사상 지위 및 성별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연간 영업 개월 수, 일일 평균 영업시간,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영업시간 및 기간과 사업실적간의 합리적 판단자료와 업종별 근로일수 등을 파악
사업체 건물 연면적	사업체 규모 및 분석지표 작성
객석 수	음식점업의 규모변화를 파악하고 관련 분석지표 생산에 활용
사업실적	업종별 경영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 항목

□ 주요 개념 정의

사업체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 하에 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개개의 경제단위(장소 단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
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체
직영점	가맹본부가 운영 및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업체
가맹점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가맹금 등을 가맹본부에 지불하는 대신 상품, 교육, 경영관리의 노하우 등을 제공받는 사업체 또는 사업자(계약 단위)
매출액	사업체가 지난 1년간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총수입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기타종사자 (1)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고정 급여 등을 받는 사람 (2)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임시근로자)과 1개월 미만으로 일당 등을 지급받고 일하는 사람(일용근로자) (3) 자영업자: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 (4)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종사하는 사람 (5)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료를 받지 않고 주로 실적에 따라 수수료 또는 봉사료 등을 받는 사람

○ 국내 또는 국제기준 비교 : 해당없음

1-2 적용 분류체계

□ 한국표준 산업분류 적용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업종(16개)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였음

프랜차이즈 업종(분류)명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상 산업분류명
체인화 편의점	체인화편의점(4712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47612)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47811)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47822)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5611)
	한식 일반음식점업(56111)
	한식 면요리 전문점(56112)
	한식 육류요리 전문점(56113)
	한식 해산물요리 전문점(56114)
외국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5612)
	중식 음식점업(56121)
	일식 음식점업(56122)
	서양식 음식점업(56123)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56129)
제과점업	제과점업(5619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56192)
치킨전문점	치킨 전문점(56193)
김밥, 기타 간이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56194)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56199)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56213)
	기타 주점업(56219)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
	커피 전문점(56221)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56229)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두발 미용업	두발 미용업(96112)
가정용 세탁업	가정용 세탁업(96912)
기타 프랜차이즈	위의 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분류

1-3 조사표 구성

□ 2019년 기준 조사항목 17개

- 2018년 기준 대비 삭제 1, 변경 1
- 주요 변경 내용: (삭제) 사업실적(2)의 로열티, (변경) 사업실적(2)의 재료매입비(필수품목) 항목 이동

<조사항목 관련 의견수렴 결과>

조사항목	변경(안)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
-문18 사업실적(2) (1) 로열티	응답부담 감소를 위해 조사항목 삭제	<의견내용> 로열티 방식에 대한 현황조사 필요. 로열티 부담 방식만 확인하거나 사업실적 비용부문에 계산 <검토결과-미반영> 응답자의 계약상 비밀, 민감 정보에 해당하여 불응 등 조사 불가 사유 다수 발생
-문18 사업실적(2) (2) 재료매입비(필수품목)	필수품목 문구 제외 및 사업실적(1) 영업비용으로 이동	<의견내용> 재료매입비를 본사와 그 외로 구분하여 질문 필요. 영업비용 중 가맹본부에 지급한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필요 <검토결과-미반영> “재료매입비”는 문17 사업실적-매출원가에 반영

1-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

1) 청내 실무자 회의

- 목적 : 직전 조사에 대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금년도 개선 방안을 모색
- 대상 : 본청 담당자 및 유경험자, 지방청 및 사무소 조사업무 담당실무자
- 방법 : 기본방향 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 내용 : 금년 조사의 기본방향, 신규조사 조사표(안) 공유 및 의견수렴, 개선사항 의견수렴

2) 전문가 및 관련 기관 의견 수렴

- 목적 : 2019년 기준 프랜차이즈 조사의 조사항목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에 대하여 정부부처, 관련 협회, 학계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통계 품질 제고
- 대상 : 정부기관, 관련기관 및 학계 전문가
- 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 심사

3) 조사표(안) 설계

- 청내 실무자,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조사표 설계

4) 통계작성 변경승인

- 통계청 통계조정과에 통계작성 변경승인 신청 → 승인완료

1-5 조사표 변경이력

□ 조사표 변경이력

변경승인 일자	변경항목	변경내용	변경사유
2020.01.30	공표내용	<변경전> - 「18 사업실적(2)」 항목*을 결과표 공표 항목에 포함 * 로열티 부담 및 방식, 재료매입비(필수품목) 유무 및 비율 <변경후> - 「18 사업실적(2)항목을 결과표 공표항목에서 제외	- 응답자의 항목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 및 불응 등으로 결과표 이용 상 한계 * 로열티 항목은 계약상 비밀/민감 정보로 불응 다수 발생 * 재료매입비(필수품목) 항목은 계약 상의 개념과 응답자의 판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신뢰성 검증 및 차기 조사 후 비교검토 필요
2020.06.08	작성방법	<변경전> - 전수조사 * 약 21만 사업체 <변경후> - 표본조사 * 약 25천 표본사업체	- 조사효율성 제고 * '18년 기준 프랜차이즈 모집단 구축으로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여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 제고
	조사실시 기간	<변경전> - 작성기준년도 익년 6월~7월 중(경제통계 통합조사에 포함) <변경후> - 작성기준년도 익년 7월~8월 중(경제통계 통합조사에 포함)	-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 변경으로 상 황종료 시 기존 승인사항 유지
	작성사항	<변경전> - 「18. 사업실적(2)」 (1) 로열티 <변경후> - 삭제	- 응답자의 항목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 및 불응 등으로 현장조사의 한계 * 로열티 항목은 계약상 비밀/민감 정보로 응답 부담
		<변경전> - 「18. 사업실적(2)」 (2)재료매입비(필수품목)관련 <변경후> - 항목이동 * 「17. 사업실적」 (2) 영업비용-매출 원가 추가로 항목 이동	- 재료매입비(필수품목) 항목은 계약 상의 개념과 응답자의 판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신뢰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대안으로 사업실적 영업비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항목 이동
2021.06.02	조사실시 기간	<변경전> - 작성기준년도 익년 7월~8월중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포함) <변경후> - 작성기준년도 익년 6월~7월중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포함)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변경사항으로 기존 조사기간으로 재변경

1-6 응답 소요시간

- 2019년 기준 조사의 평균 응답 소요시간은 28.6분으로 나타남

2. 모집단 및 표본틀

2-1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 목표 모집단

- 사업체* 정의에 부합되는 대한민국 내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체
 - *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에 독립적으로 종사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 단위

☐ 조사 모집단

- 2019년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 단, 교육 서비스업(P), 군부대 내 프랜차이즈사업체, 콜택시 등은 제외

☐ 목표 모집단과 조사 모집단의 차이

- 교육서비스업, 군부대 내 프랜차이즈사업체, 콜택시 등 현장조사 실시가 어려운 일부 업종 및 사업체는 제외

2-2 표본추출틀(표본조사)

☐ 표본추출틀

- (2020년)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조사(2019년 실시) 결과 모집단에 속한 사업체 중 유고사업체 제외 및 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브랜드 가맹 사업체를 추출하여 작성된 가맹점 명부
 - (선정 이유) 2019년 조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사전모집단 및 표본 추출틀로 활용하였음
- (2021년 이후) 공정위 정보공개서 가맹점 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성한 전년도 사후모집단을 활용
 - (선정 이유) 2020년부터 표본조사로 전환
 - (개편주기) 1년
 - (구축과정) 1) 정보공개서 가맹점 리스트의 가맹점 주소, 브랜드명 등 정비 2) 전국사업체조사 연계를 통해 가맹점별 종사자수, 매출액 정보 추가하여 표본추출틀 완성

☐ 모집단 변동에 따른 표본 추출틀 개편

- 모집단인 공정위 정보공개서 가맹점 리스트가 매년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표본추출틀 개편할 예정
 - (개편주기) 1년
 - (필요성) 공정위 정보공개서 가맹점 리스트가 매년 변동되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 (방법 및 절차) 1) 정보공개서 가맹점 리스트 입수 2) 입수한 리스트의 가맹점 주소, 브랜드명 등 정비 3) 전국사업체조사 연계를 통해 가맹점별 종사자수, 매출액 정보 추가하여 모집단 완성
 - (결과) 전년도 폐업사업체 제외한 실제 표본추출틀 완성

3. 표본설계 및 관리(표본조사)

3-1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가. 층화

☐ 부차모집단

- 시도 및 업종분류 : 공표범위에 의해 부차모집단으로 설정

☐ 전수업종

- 부차모집단별(시도×업종분류) 10개 이하인 경우 전수업종으로 지정하여 모두 표본으로 선정: 103개

☐ 층화

- L-H방법*에 의해 1개의 전수층과, 2개의 표본층으로 층화
 - * (Lavalley-Hidiroglou) 목표오차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총 표본의 크기가 최소가 되도록 층의 경계와 층별 표본크기를 반복적 알고리즘의 수렴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방법
- (층화변수) 종사자수
- (층의 개수) 전수층 포함 3개
- (층별 최소 표본수) 층별로 최소 표본수 5개 지정

나. 표본규모 및 배분

☐ 표본추출방법: 층화계통추출법

☐ 표본규모 산식

- (층화) 시도(17)×업종분류(25)×종사자층(3, 마지막 층은 전수층)
- (배분방법) Y-층합 역배분

○ (표본규모 계산) 층화추출 표본규모산식 적용

$$\cdot n_{hi} = {}_cN_{hi} + {}_s n_{hi}$$

$$\cdot {}_s n_{hi} = \frac{\sum_{j=1}^2 {}_s N_{hij}^2 \cdot {}_s S_{hij}^2 / {}_s a_{hij}}{cv^2 \cdot Y_{hi}^2 + \sum_{j=1}^2 ({}_s N_{hij} \cdot {}_s S_{hij}^2)}$$

$$\cdot \cdot a_{hjj} = \frac{{}_s Y_{hij}^q}{\sum_{l=1}^2 {}_s Y_{hij}^q} \quad (\text{여기서 } q=0.5), \quad {}_s S_{hij}^2 = \frac{\sum_l (y_{hijl} - \bar{y}_{hij})^2}{{}_s N_{hij} - 1}$$

$$\cdot {}_s n_{hij} = {}_s n_{hij=1} \cdot {}_s a_{hij}$$

첨자 h : 시도	변수 n : 표본크기
i : 업종분류	N : 모집단크기
j : 1,2(표본층), 3(전수층)	Y : 종사자수
l : 개별사업체	cv : 목표 상대표준오차
c : 전수층	a : 층별 표본수 배분 비율
s : 표본층	

○ (목표 상대표준오차) 시도×업종분류별 종사자수 기준 2.42%

다. 표본사업체 선정

□ 표본사업체 선정

- 표본틀: 2018년 기준 프랜차이즈조사 결과 모집단에 속한 사업체 중 유고사업체 제외 및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브랜드 가맹 사업체를 추출하여 작성된 가맹점 명부(157,070개 사업체)
- 전수업종 및 전수층: 모두 표본으로 선정
- 표본층: 계통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으로 선정
 - (표본선정 방법) 부차모집단(시도×업종분류)별 종사자규모 층별로 브랜드고유번호(관리번호), 매출액으로 정렬한 후 계통추출
 - (중앙값 계통추출) 대표성 높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하여 계통추출 시작점을 추출 간격 내 중앙값에 위치하는 사업체로 함

□ 표본선정 시 제외 사업체

- 조사애로 등을 감안하여 도서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제외

□ 예비표본 선정

- 표본사업체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목표 표본수를 맞추기 위해 선정
 - 1개 표본 당 예비표본 5개씩 선정(층별 모집단 크기에 따라 5개보다 작을 수 있음)
- (예비표본선정: 61,784개) 표본층 표본 선정을 위한 계통추출 시 동일 추출간격에서 랜덤하게 5개씩 예비표본 선정

라. 최종표본규모

□ 최종표본수는 25,028개로 추출률은 15.9%

- 전수조사(전수업종 및 전수층) 7,977개, 표본층 17,051개

<표 8> 업종분류별 모집단수 및 표본수

(단위: 개, %)

업종분류	모집단수	표본수	추출률(%)	전수층	표본층
합계	157,070	25,028	15.9	7,977	17,051
G. 소매업	38,274	3,271	8.5	767	2,504
47122. 체인화 편의점	33,307	1,408	4.2	149	1,259
4761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1,377	548	39.8	150	398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1,315	485	36.9	176	309
47822. 안경 및 렌즈 소매업	2,275	830	36.5	292	538
I. 음식점업	90,180	16,399	18.2	5,268	11,131
56111. 한식일반음식점업	14,737	1,714	11.6	546	1,168
56112. 한식면요리전문점	1,287	472	36.7	142	330
56113. 한식육류요리전문점	4,999	1,139	22.8	354	785
56114. 한식해산물요리전문점	385	236	61.3	111	125
56121. 중식음식점업	1,021	435	42.6	171	264
56122. 일식음식점업	1,648	540	32.8	192	348
56123. 서양식음식점업	1,071	518	48.4	247	271
56129. 기타외국식음식점업	1,057	421	39.8	156	265
56191. 제과점업	5,733	1,258	21.9	373	885
5619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9,063	1,752	19.3	676	1,076
56193. 치킨전문점	19,112	1,503	7.9	377	1,126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9,346	1,543	16.5	456	1,087
56199. 간이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677	406	60.0	130	276
56213. 생맥주 전문점	2,658	796	29.9	201	595
56219. 기타 주점업	4,902	1,241	25.3	352	889
56221. 커피전문점	10,963	1,816	16.6	521	1,295
56229. 기타비알코올음료점업	1,521	609	40.0	263	346
S.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8,616	5,358	18.7	1,942	3,416
95212. 자동차전문수리업	6,761	1,663	24.6	747	916
96112. 두발미용업	2,623	808	30.8	386	422
96912. 가정용세탁업	3,476	674	19.4	172	502
99999. 기타 프랜차이즈	15,756	2,213	14.0	637	1,576

3-2 표본관리

- 연간조사로써 표본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해당사항 없으나, 표본업체의 폐업 등 유고발생시 변동부호를 통해 사유 파악하고 있음

구분	변동부호	변동내용	변동내용 설명	비고
조사표작성	00	변동없음	장소가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	· 사업체의 일부내용(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수정, 보완한 사업체도 포함
	11	브랜드 변경	동일한 브랜드 산업분류로 변경된 경우	· 브랜드명 수정 후 비고란에 변경전 브랜드명 기입
조사표미작성	30	불응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	조사 가능한 항목까지 최대한 조사
	61	폐업 (조사불가)	사업체가 브랜드 산업분류 변경, 폐쇄, 철거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비고란에 폐업연월 기입 · 이전된 주소, 전화번호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전출(변동부호73) 처리
	62	휴업	장기 휴업으로 조사 불가	장기휴업으로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음
	63	이중등재	동일 사업체임에도 명부상 중복된 경우	중복 사업체 중 한 개의 사업체만 유지하고 나머지 사업체는 이중 등재 처리
	64	흡수합병	다른 사업체에 흡수 합병되어 사업체 부재	흡수 합병한 사업체명, 전화번호 확인 후 비고란에 기입
	73	전출 (관할구역 외)	사업체가 다른 관할구역으로 전출한 경우	· 전출간 주소, 사업체명, 전화번호 등을 확인 후 비고란에 기입
	95	조사대상 외	· 사업체가 프랜차이즈가 아니거나 프랜차이즈 직영점, 본사인 경우 · 산업분류가 P(교육서비스업), 군부대 내 프랜차이즈, 콜택시로 변경된 경우	· 직영점, 본사, 산업분류, 군부대 내, 콜택시 여부 등 비고란에 기입
	99	기타	위 변동내용 외의 기타사항	변경내용을 비고에 기입

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
 - 사업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및 인터넷 조사방법을 병행(필요시 자기기입, e-mail, fax 활용 가능)

□ 조사방법 선택 기준

- 자료의 획득(행정자료 대체) 가능성, 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사방법 결정

□ 면접조사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만나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
- 사업체 방문 시 유의사항
 - 사업체 방문시간은 사업체의 담당자(응답자)와 협의 후 결정
 - 사업체 방문 시에는 사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대표자나 실무자(회계 또는 경리부서)를 만나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표를 작성(협조공문 지참)

□ 인터넷조사

- 인터넷조사 개요
 - (조사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하기를 원하는 사업체
 - (ID/PW부여) 조사원이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인터넷조사 희망시 ID/PW 부여
- 인터넷조사 참여 체계



2. 조사원

2-1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조사요원 구분

- 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로 구분
 - 조사원 : 도급형태로 계약한 임시조사원으로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수행
 - 조사관리자 : 지방청(사무소)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로 임시조사원 자료 내검 및 관리
 - 조사지원관리자 : 지방청(사무소)별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로 지방청 담당공무원 및 조사관리자 업무 보조

□ 조사원 채용 방법 및 과정

- 지방청(사무소)별 조사요원은 경제통계 통합조사*에서 일괄 채용·운영
 - *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경제통계 조사를 사업체의 응답부담 완화를 위해 1회 방문으로 완료하는 One-stop Survey
- 지방청(사무소)별 홈페이지 등 채용광고 → 조사원 모집 → 채용 → 담당사업체 배정
 - 채용광고부터 업무분장까지 나라통계시스템을 사용

□ 자격요건, 급여수준

- 조사요원 자격요건
 - 1) 조사원
 - 조사지역 내 거주자로서 조사기간 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2) 조사관리자
 - 조사원 채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조사원 통솔력이 있으며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 및 지도할 수 있는 사람
 - 지방청(사무소)의 관내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정에 밝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 지방청(사무소) 직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지방청(사무소)의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한 기준
 - ※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통계청 훈령 제544호, 2020. 2. 25. 개정)
 - 3) 조사지원관리자
 - 조사지역 내 거주자로서 조사기간 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
 - 지방청(사무소) 직원 및 조사관리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력이 있는 사람
 - 기타 지방청(사무소)의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한 기준

※ 인사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통계청 훈령 제544호, 2020. 2. 25. 개정)

○ 급여수준 및 부가혜택

1) 조사원 : 조사표 회수실적에 따라 도급수당 지급(일반수용비)

- 교육수당 : 68,720원/1일

- 조사표당 단가 : 12,726원 = 조사원 1일 단가 68,720원/조사 및 급지별 1일 표준업무량 (5.4매)

- 미완료 사업체 조사표 : 유고*(4,500원), 불응**(9,000원)

* 폐업, 휴업, 이종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

** 최초 방문 이후 추가 2차 설득(총3회)을 거친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

2) 조사관리자 : 근로자 형태로 운영(일용임금)

- 1일 수당 : 71,340원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기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채용기간 중 1개월 만기 근무 시 연차 1일 지급

3) 조사지원관리자 : 근로자형태로 운영(일용임금)

- 1일 수당 : 68,720원

- 채용기간 중 1주일 만기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채용기간 중 1개월 만기 근무 시 연차 1일 지급

2-2 조사원 교육훈련

□ 1단계 교육(지방청(사무소) 교관요원)

○ 교육일자: 6. 17. ~ 6. 19.(3일간)

○ 교육대상: 지방청(사무소) 교관요원

○ 교육내용

- 201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세부시행계획

- 통합조사 지침서(각 조사별 세부 지침)

- 재무제표와 연간조사 항목 간의 상호관계 설명

- 조사시스템 사용요령 및 조사원 업무분장 등

□ 2단계 교육(조사요원)

(1) 사전교육

○ 교육대상

- 조사원(예비조사원 포함), 조사관리자, 조사지원 관리자

○ 교육방법

- 통계교육원 이러닝 및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의 사이버교육 수강
- 최종합격자 공고 시 집합교육 전에 사이버 교육을 수강할 것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

(2) 본교육

- 기본방향: 지방청(사무소) 교관요원이 자체 교육 실시
- 교육대상: 경제통계 통합조사 현장업무 담당자
 - 지방청 담당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예비조사원 포함) 등
- 교육기간 : 6. 30. ~ 7. 3. 기간 중 2일
- 교육내용
 - 현장조사 요령(불응업체 대처 방안 등) 및 명부관리
 - 경제통계 통합조사 지침서(각 조사별 세부 지침)
 - 조사별 조사표 작성 요령(공통항목 및 특성항목)
 - 내용검토 및 조사표 입력, 결산서와 조사항목 간의 관계 등
 - 현장 사례 및 실습 위주의 교육실시
- 교육 지원: 지방청(사무소) 요청 시 본청 가용인원을 통한 교육 지원

□ 입력시스템 교육 실\시

- 교육일자 : 첫 근무일(7.6.)에 실시
- 교육대상 :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지방청 교관요원이 조사관리자 및 조사지원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실시
- 교육내용
 - 입력시스템(조사표 입력 및 내검, 명부보완, 업무량 배정 등) 교육
 - 기타 전달사항 및 의견수렴

□ 교육대상자 명단 작성 및 유고자 관리

- 교육대상자 명단 및 서명부 작성으로 교육 참석여부 확인
- 불참자, 중도이탈, 대리참석 등 유고자 명단을 작성하여 별도 교육실시

□ 교육시간의 적절성 검토 여부

- 교관단 교육 및 조사요원 교육은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일부로 실시하고 있음
- 통합조사 교관단 교육은 연 1회(2박3일), 조사요원 교육은 교관이 2일동안 사무소 별 12시간 내외 직접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집합 교육시간은 이론과 실습이 연계되도록 편성
 - (이론) 조사 지침서의 조사개요, 조사원 관련 업무 및 현장조사요령, 사업체 명부보완 및 정리, 조사표 작성 및 내검요령 등을 포함
 - (실습) 재무제표를 이용한 조사표 작성 방법, 조사표 작성 실습 등을 포함
- 집합교육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전에 사전교육(사이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조사난이도, 조사항목 등을 고려할 때 적정교육시간으로 판단됨

□ 조사원 대상 비밀보호 의무 교육 및 서약서 작성

- 조사원 교육 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직원의 기본자세로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답자 정보의 비밀 엄수 등을 교육, 서약서 작성 제출

2-3 조사원 업무량

□ 조사원별 업무량

- 조사별 업무량은 지방청(사무소)의 조사지역을 근거리, 원거리 및 기피지역 등 3개 급지*로 구분하여 1일 표준업무량을 산정
 - * 근거리(A급지) : 이동거리 40km 미만
 - * 원거리(B급지) : 이동거리 40km 이상
 - * 기피지역(C급지) : 군부지역, 도서지역 등 조사 기피지역

<조사 및 급지별 1일 표준업무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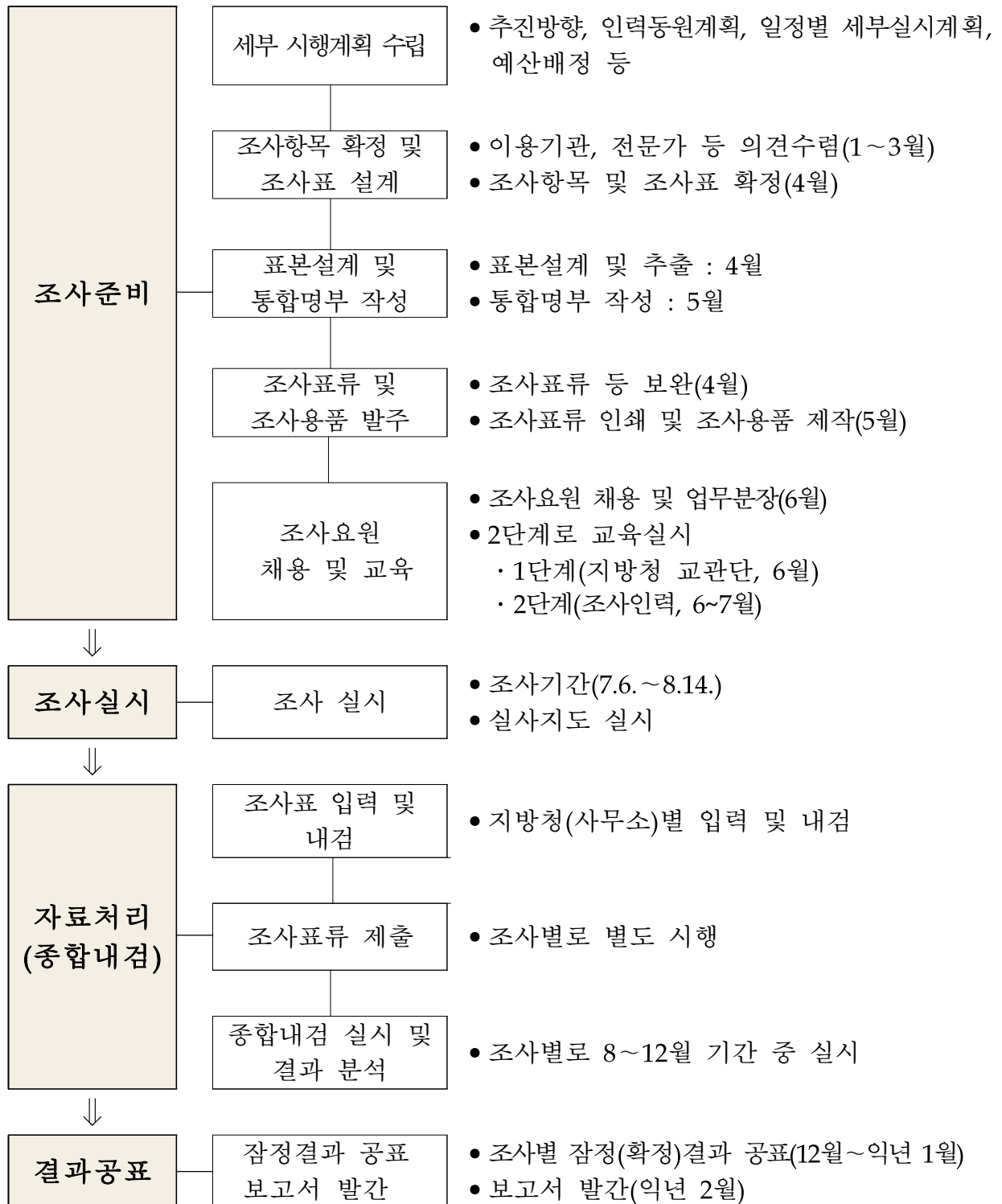
구 분	1일 표준 업무량	급지별 업무량		
		근거리(A급지)	원거리(B급지)	기피지역(C급지)
프랜차이즈조사	5.4매	5.1~5.7매	3.4~5.0매	3.3매

* 인터넷조사 대상 사업체도 동일기준 적용

** C급지 사업체는 본청 산업통계과와 최종 협의하여 선정

3. 조사 실시

3-1 조사업무 흐름도



3-2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홍보

- 본청 경제통계 통합조사 홍보
 -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보도자료 작성·배포
 - 정부 광고매체(전광판) 광고
 - 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경제통계 통합조사 배너연결 및 협회지 안내문 게재
 - 조사대상 사업체에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조사일정 홍보문구를 삽입한 홍보물품 제작
 - 통계청 내선전화 통화연결음 조사일정 홍보
 - 통계청 홈페이지 알림판 안내 및 조사홈페이지 링크
 -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 오픈
- 지방청 경제통계 통합조사 홍보
 - 지역신문 및 방송사, 인터넷 신문 보도자료 작성·배포
 - 지방청 청사 및 유동인구 많은 장소에 현수막 설치
 - 조사 대상사업체(관할지역 전체)에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
 - 관내 공공 전광판 광고
 - 지역 방송(TV, 라디오) 자막방송 및 광고
 - 홈페이지 알림판 및 배너광고

□ 응답자 사전통지 실시여부

- 조사 대상사업체 사전 협조요청 공문 발송(종사자 30인 이상 사업체)

□ 사업체 변동 확인 및 조사명부 보완

- 조사담당자가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대상 사업체의 전입·전출, 폐업, 산업분류 변경 여부 등을 파악하여 조사명부에 보완
- 변동 등이 없는 사업체를 직접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대상 사업체”로 선정되었음을 협조 공문으로 통보
- 사업체의 응답자가 비대면 조사를 원하는 경우 협조 공문 상 인터넷조사 참여 정보를 안내하거나, 조사표와 조사기입요령서를 배부

3-3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 조사표 작성 시 유의 사항

- 조사표 기입 및 수정
 - 조사표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을 사용하여 정자로 기입
 - 조사된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는 적색 볼펜으로 수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두 줄(=)을 긋고 여백에 수정
- 조사대상이 사업체이므로 해당 사업체에 해당되는 내용만 조사해야 함
 - 대표자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전체 실적 및 종사자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브랜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출력조사표에 있는 브랜드 산업분류는 수정하지 않음
 - 브랜드 산업분류와 다른 산업내용이 있을 경우 '주사업'에 서술식으로 기입한 후 해당 산업내용에 해당되는 산업분류부호를 '주사업 산업분류부호'에 기입
- 이 조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실적을 조사
 - 결산 마감 월이 12월이 아닌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1년간의 실적을 조사
 - 반기(6월, 12월)별 결산사업체의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결산자료를 합산하여 조사
- 사업실적 등 금액자료 조사 시 유의사항
 -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업체는 사업체의 회계자료에 의해 작성
 -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체는 월평균 또는 1일 평균 실적을 먼저 파악한 후 사업체별 영업월수 또는 일수를 적용하여 연간으로 환산
- 사업실적 등 금액자료 조사는 백만원 단위이고, 조사항목의 수치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며 소수점 단위 미만의 수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
【예】 240,000,000원 ⇒ 240백만원, 18.7㎡ ⇒ 19㎡, 34.4% ⇒ 34%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등에는 원, 천원 단위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백만원 단위로 먼저 환산한 후 작성
- 조사항목 내용 검토 및 확인
 - 조사표의 어떤 항목을 정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상호 관련되는 항목의 내용도 함께 검토하여 관련 항목도 함께 보완
【예】 종사자수10명 ⇒ 20명, 관련 항목인 인건비나 급여액이 적정한지를 검토
 - 작성된 조사표는 현장에서 사업체 응답자와 작성내용을 확인하여 착오기입, 항목누락, 관련 항목 간 계수 불일치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완

□ 조사항목별 작성요령

- 사업체명
 -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로 사업체명을 정확하게 기입
- 브랜드명
 -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하여 시스템 브랜드명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
예) 씨유, CU, 씨 유, C U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
- 가맹점명
 - 브랜드명을 제외한 가맹점명인 지점명을 정확히 기입
- 소재지
 - 소재지란에 도로명, 건물번호 및 빌딩, 시장, 상가 등의 명칭과 동·층·호까지 최대한 자세하게 기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가 빈칸일 경우, 사업체에 확인하여 입력 및 미기입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부
 - 가맹점, 직영점, 가맹본부인지 여부확인
- 사업의 종류
 - 브랜드별 정해진 산업분류부호가 정확하게 기입되었는지 확인
-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 종사자 수 합계는 반드시 1인 이상이어야 함
 - 24시 편의점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명이면 확인
 -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등을 참조하여, 일정급여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이나 수수료를 받는 기타종사자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체육시설 운영업의 회원 등과 같이 대상 이외의 사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간 급여액을 조사
·종사자 1인당 월평균 급여액(연간 급여액 ÷ 종사자 수 ÷ 영업개월 수)을 계산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
- 연간 영업 개월 수
 - 사업체가 2019년 1년간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를 말함
 - 정상적으로 영업한 개월 수는 업종 및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체의 규정 또는 판단에 따름
 - 계절적 요인, 노동쟁의 및 기타요인으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

- 일일 평균 영업시간
 - 사무실과 현장의 영업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사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기준으로 조사되었는지 확인
-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 법정공휴일이 아닌 사업체의 정기적인 휴무일만을 고려하여 기입했는지를 검토(국경일, 창립기념일 등은 제외)
- 사업실적
 - 영업이익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이익이 적자이거나 과대 또는 과소한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비용 구성 항목별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
- 사업체 건물 연면적
 - 단위는 m^2 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입되었는지 확인
 - 사업체 건물 연면적 중 임차면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비용의 임차료 항목에 그 비용이 조사되었는지 확인(단, 전세의 경우 임차료에 포함되지 않음)
 - 매장 연면적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고 직접 판매하는 장소의 면적이므로 제외해야 할 상품 보관창고나 하치장 등의 면적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객석 수
 - 방안에 좌석은 없고, 식탁만 있는 경우에 객석 수가 누락 혹은 과소 조사됐는지 확인

3-4 현장조사 관리

□ 현장조사 관리 체계

- 조사인력 : 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입력·내검요원 구분
- 지방청(사무소)별 통합조사의 조사인력은 전체 통합하여 채용·운영
 - 통합 채용된 조사인력은 연간조사별 업무분장 시 구분하여 운영
- 조사업무 지원을 위한 조사지원관리자 배정
- 지방청 총괄업무직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인력지원
-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조사원 운영
 - 군 지역, 이동거리가 원거리 등 일부 특수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경우 현지조사원을 채용하여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

□ 현장조사 관리 방법

- 효율적인 조사인력(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조사원) 업무분장 실시
 - 통합조사 현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도급조사원 등 조사인력 상호 간 관계를 체계화하는 업무분장 실시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의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업무분장
 - 조사원은 지방청(사무소)의 사업체 분포, 이동거리, 조사원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업무분장
- 체계적인 조사인력 관리
 - 지방청(사무소)에서는 조사관리자의 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 조사원별 조사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
 - 조사원 채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조사완료 및 부실 조사표가 없도록 조사관리자를 활용하여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지방청(사무소)담당직원은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종료한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를 조사관리자가 수정·보완토록 조치
- 중도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대체조사원에게 업무 인수인계 철저
 -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조사원이 담당하게 될 조사대상명부, 조사표류 등 현장 업무를 철저히 인수인계

□ 현장조사 관리자 역할

- 조사관리자 1명당 5명 내외 조사원 관리
- 조사원의 업무분장 및 사업체명부 정리
- 지방청(사무소) 담당직원의 업무지시를 받아 조사원을 지도·관리
- 조사표 내검·지도 및 착오 조사표 수정·보완
- 담당조사원이 조사 완료된 조사표는 즉시 입력 및 내검
- 응답불응 사업체 현장 방문 독려

□ 현장조사 실사지도

- 본 조사 기간 중 실사지도 실시(실사지도 기간 : '20.7.6.~7.24, 8.3~8.14.)
 - 본조사 업무 독려 및 조사 진행사항 파악

□ 현장조사 파라미터 수집

- 2019년 기준 조사의 평균 응답소요시간은 28.6분으로 나타남
- 그 외 파라미터는 없음

3-5 조사 질의응답 체계

□ 조사원 조사 관련 질의응답 체계 및 운영 방법

-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에 Q&A 질의응답 코너 운영
 - 조사기간 중 조사담당자가 조사원 질문에 실시간 응답
- 조사기간 중 조사담당자가 실사지도 방문
 - 지방청(사무소) 상황실에 방문하여 조사관리자들의 질의응답 답변
- 지방청 총괄 담당자에게 직접 질의

□ 응답자 조사 관련 질의 응답 체계 및 운영 방법

- 조사표, 조사홍보물 등에 조사 관련 질의처(콜센터) 홍보
- 응답자가 콜센터로 문의하면 전문상담사가 응대

□ 주요 질의 응답 사례

- 프랜차이즈 조사지침서 부록 '주요 사례별 처리방법 - 5.프랜차이즈 관련 질의사항' 내용

1.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의 개념을 모르겠습니다.

☞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브랜드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2. 프랜차이즈 구분 기준이 있나요?

☞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프랜차이즈에 해당합니다.

 -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 ② 가맹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 ⑤ 지속적인 거래관계

3. 대리점은 프랜차이즈가 아닌가요?

☞ 일반적으로 대리점은 위의 1,2,3,5번 조건은 만족하나 4번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가맹금의 형태는 가입비, 상표사용료, 보증금, 임차료와 물품대금의 유통이익, 교육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대리점은 보증금을 받고 있으므로 문헌상 가맹사업법 적용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보증금이 로열티, 가입비, 도매가격 이상의 물품대금과 상관이 없으므로 가맹사업법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4. 사업체에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 브랜드명(영업표지) 검색이 안 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① 인터넷 검색창에서 해당 브랜드명(영업표지)를 검색해보고 [가맹문의] 또는 [가맹점모집] 등이

있으면 프랜차이즈가 맞습니다.

- ② 공정위 가맹거래사업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접속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열람]에서 영업표지 검색에 해당 브랜드명(영업표지)를 검색 후 존재하면 프랜차이즈가 맞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확인이 안 되면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 앞선 방법으로 확인하여, 프랜차이즈가 맞다고 판단되는데 리스트상 브랜드명(영업표지)이 없는 경우는 직접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관리번호 '99999', 업체의 해당 '브랜드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단, 99999 로 입력 전에 정말 없는 브랜드(영업표지)인지 영문, 한글, 띄어쓰기 등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보시고 입력 부탁드립니다.

ex) 씨유, CU, 씨 유, C U ... 등

5. 주유소가 가맹점이라고 조사를 해왔는데, 가맹브랜드는 검색이 안 됩니다. 주유소가 프랜차이즈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산업 전반에서 프랜차이즈 업종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업종을 프랜차이즈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의 5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해당브랜드 홈페이지 검색 시 [가맹모집]도 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가 맞습니다.

☞ 다만, 대부분의 주유소 업종이 대리점과 같은 사유로 4번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영업표지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1.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사업체 아님'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6. 스타벅스, 커피빈은 프랜차이즈가 아닌가요?

☞ 프랜차이즈는 직영도 운영하지만 가맹도 운영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직영만 100% 운영하는 브랜드(영업표지)는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 스타벅스, 커피빈은 현재까지 직영만 100% 운영하고 있으므로 프랜차이즈가 아닙니다.

7. 롯데마켓999,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같은 슈퍼마켓도 프랜차이즈인가요?

☞ 공정위 가맹거래사업 홈페이지에서 영업표지가 검색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4. 응답자 및 무응답 대처

4-1 응답자

☐ 적격 응답자의 지위 및 지정이유

- 적격 응답자 : 사업주, 경리 및 재무회계 팀원 등
- 지정 이유 : 사업체의 내용을 잘 알고 책임 있게 응답할 수 있는 대표자나 실무자

4-2 기억응답

☐ 응답자 기억응답과 관련

- 조사기준시점 및 조사대상기간과 조사실시시점과 간격에 의한 기억의 오류가 존재할 수 있으나, 조사항목 대부분이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작성 가능

4-3 무응답 대처

☐ 현장조사 무응답 처리방법

- 항목 무응답 시
 - 조사담당자가 응답자를 재방문하여 대면 추가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응답 부분만 전화조사
 - 추가조사는 조사담당자(1차) → 조사관리자(2차) → 지방청(사무소) 담당공무원(3차)로 실시
- 단위 무응답 시
 - 조사목적, 조사자료의 통계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조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
 - 성실응답의무(통계법 제32조), 비밀의 보호(통계법 제33조) 조항을 활용하고 계속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에게 보고
 - 최소 2회 이상 방문하여 설득(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과 협력)
 - 지방청(사무소)장 명의의 공문 발송하고, 조사에 응하도록 요청

4-4 표본대체

☐ 단위무응답(불응, 부재 등) 표본대체 허용 여부 : 허용하지 않음

- 조사기간이 충분하고 전화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단위무응답(불응, 부재 등) 표본대체는 허용하지 않음
- 불응의 경우 자료집계 시 임putation 실시

5. 사후조사

☐ 사후조사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사후조사(모니터링) 미실시

6. 행정자료 활용

☐ 행정자료 활용 목적

- 전수조사 사업체의 경우 행정자료로 무응답 대체
- 조사자료에 대한 정확성 검증
- 사후모집단 구축

☐ 행정자료 활용 내용 및 항목

- 무응답 대체 및 정확성 검증
 - (사업실적) 국세청 법인세, 간편장부, 부가가치세 등 자료
 - (매출액, 매장면적) 공정위 및 지자체의 정보공개서 자료
- 사후모집단 구축
 - (활용자료) 공정위 및 지자체 정보공개서 가맹점 리스트
 - 조사기준년도 정보공개서를 8월 이후 입수하여 모수 추정(가중치 작성)을 위한 사후모집단 구축
 - 사후모집단과 전국사업체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해 표본추출틀 구축
- 폐업사업체 추출
 - 표본추출틀 구축 시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를 활용하여 폐업사업체 추출
- 행정자료 이용제약사항은 없음

7. 활용 행정자료의 특성 및 입수체계

□ 행정자료의 특성

(1) 국세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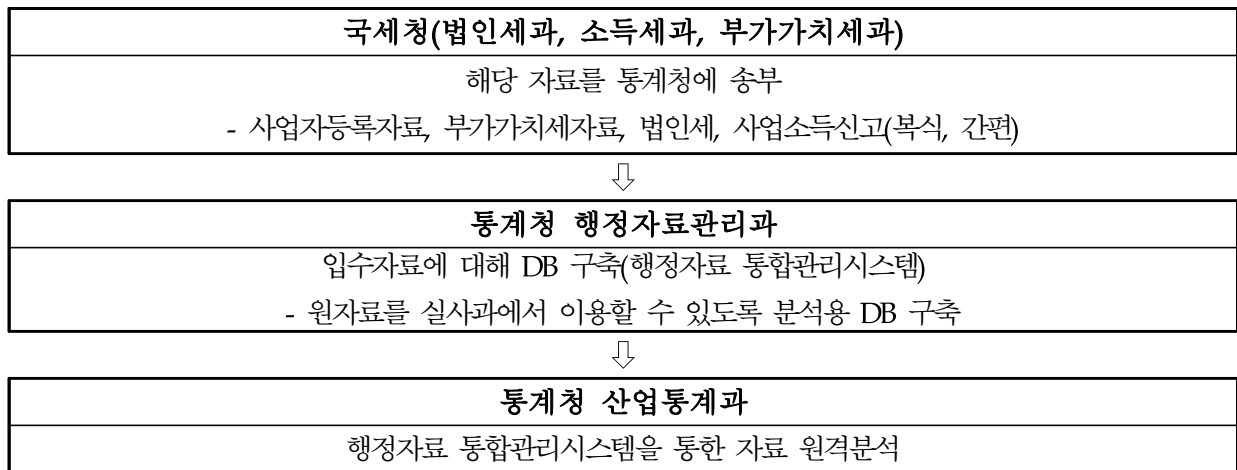
- 수집 목적 : 과세(법인세, 사업소득세, 부가세, 사업자등록)
- 수집 내용
 - 법인세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6종(운송, 분양, 공사, 제조, 임대, 기타) 원가명세서 신고 항목
 - 사업소득신고자료 : 복식(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간편(사업소득) 신고 항목
 - 부가세 : 유형별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
 - 사업자등록 :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정보
- 수집 과정 및 방법 :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 신고 등
- 수집 일정
 - 법인세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신고
 - 사업년도(1.1-12.31) : 다음연도 3월말까지
 - 사업년도(전년도 7.1- 6.30) : 9월말까지
 - 사업소득세 : 사업년도(1.1-12.31) 익년 5.1-5.31일까지
 - 부가세 : 신고납부기한 1.25일까지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수집 및 관리 기관 : 국세청
- 유지관리 방법 : 시스템으로 유지 보안 관리
- 기타 행정자료의 특성 : 국세청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목적으로만 활용함

(2) 정보공개서

- 수집 목적 :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 수집 내용
 -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임원의 범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과 제한, 영업개시절차, 교육·훈련
- 수집 과정 및 방법 : 가맹본부 최초등록시 및 변경사항 발생시 가맹본부에서 공정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에 제출
- 수집 및 관리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기타 행정자료의 특성 : 세부 가맹점별 정보는 익년 8월 이후 제출받아 수집

□ 행정자료 입수 체계

(1) 국세청 자료



(2) 정보공개서

-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 매년 3~4월 산업통계과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자료요청 공문발송하여 입수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 정보공개서 가맹점리스트(세부내역) : 매년 8월~11월 입수
 - 온라인 입수 : 공정거래조정원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시스템 권한 부여요청(공문)
 - 오프라인 입수 : 온라인 미등록한 자료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 방문입수

□ 법적근거

- 통계법 (법률 제17339호, 2020.6.9.)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제24조 행정자료의 제공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법률 제17758호, 2020.12.29.)

제81조의13(비밀 유지)

-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6930호, 2020.2.4.)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6호, 2018.12.31.)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Ⅳ. 통계처리 및 분석

1. 행정자료의 매칭방법

☐ 국세청 자료

- (매칭 목적) 표본틀 구축 시 폐업 사업체 제외
- (매칭 변수) 사업자등록번호
- (매칭 방법) 국세청 사업자등록자료의 폐업여부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자료의 해당업체와 매칭
- (매칭허용 한계)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한 매칭율은 100%임

2. 행정자료의 보완

☐ 가맹점 정보공개서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 전수조사 사업체의 사업실적(매출액), 매장면적 등 무응답 대체
- 조사자료에 대해 사업실적, 매장면적 등 정확성 검증

3. 자료코딩

☐ 자료코딩

- 행정구역분류부호 : 행정구역분류부호 7자리 중 시도 2자리, 시군구 3자리, 읍면동 2자리 기입
- 사업체 일련번호
 - 건물번호 : 조사구별로 건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
 - 사업체번호 : 건물별로 사업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부여한 일련번호
- 사업체 고유번호 : 사업체의 이동, 기타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부여한 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세무서에서 사업체에 부여한 고유번호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표기되어 있는 번호
- 법인등록번호 : 법인설립을 위해 등기소에 처음 등록할 당시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 산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종합색인표를 참고하여 산업세세분류단위(5자리)까지 기입
- 그 외 범주형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코딩(부호화)하여 자료 입력됨

<주요 범주형 조사항목 코드체계>

컬럼	컬럼명	코드	코드명
FRCS_FTT_CD	변동부호코드	00	변동없음
		11	브랜드 변경
		30	불응
		61	폐업(조사불가)
		62	휴업
		63	이중등재
		64	흡수합병
		73	전출(관할구역 외)
		95	조사대상 외
		99	기타
FRCS_BIZ_ACMT_S URV_YN	프랜차이즈 사업실적여부	Y	조사
		N	비조사
ED_PRPT_CD	조사구특성코드	1	일반조사구
		2	빌딩조사구
		3	시장조사구
		4	지하조사구
RPRS_SD_CD	사업체 대표자성별	1	남
		2	여
FRCS_MCHT_LTNM _YN	프랜차이즈가맹관련사업체 유무	1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사업체 아님
		2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사업체임
FRCS_MCHT_DIV	프랜차이즈사업체구분	1	가맹점
		2	직영점
		3	가맹본부
EDAY_AVG_BIZS_P D_CD	일일평균영업시간	1	8시간 미만
		2	8~10시간 미만
		3	10~12시간 미만
		4	12~14시간 미만
		5	14시간 이상

ESTM_FXTM_OFF_C WD_CD	사업체정기휴무일수코드	1	휴무일 없음
		2	월 1일
		3	월 2~3일
		4	월 4~5일
		5	월 6~7일
		6	월 8일 이상
GSEAT_EXIST_YN	객석존재여부	0	특정 산업분류 외 항목인 경우
		1	객석 있음
		2	객석 없음
FRCS_SMPL_DIV_C D	프랜차이즈업 표본구분코드	1	전수업종
		2	전수층
		3	표본층
FRCS_CD	프랜차이즈 업종코드	01	체인화 편의점
		02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03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04	안경 및 렌즈 소매업
		05	한식 음식점업
		06	외국식 음식점업
		07	제과점업
		08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09	치킨전문점
		10	김밥, 기타 간이 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
		11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12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13	자동차 전문 수리업
		14	두발 미용업
		15	가정용 세탁업
		16	기타 프랜차이즈

4. 자료입력

□ 전산입력 방법 및 내용

- 개별사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경제통계 통합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표 내용을 입력

□ 입력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입력 및 내검 시스템이 연계되어 내검 관련 각종 규칙들이 시스템 내 내장되어 있고, 입력단계에서 자동으로 오류 위치 확인 가능
※ 입력시스템 내검규칙은 별도 첨부

□ 자료입력 교육

- 자료 입력 방법 조사지침서 수록 및 지방청 교관요원이 입력시스템 교육 별도 실시
 - 교육일자 : 조사시작일(7.6)
 - 교육대상 : 조사관리자, 조사지원관리자
 - 교육내용 : 입력시스템(조사표 입력 및 내검, 명부보완, 업무량 배정 등) 교육

5. 자료내검

□ 자료 내검의 제반 단계

조사표회수 (현장 내용 검토)	• 조사항목의 기입 누락 또는 착오사항 확인 • 항목 간 연관관계 내용검토
↓	
조사표 내용검토 입력 및 보완	• 1차 내용검토 및 입력(조사원, 조사관리자) • 2차 전산내검 및 착오사항 수정·보완 (조사관리자, 조사원)
↓	
종합내검	• 조사대상명부 내검 • 행정자료 대체 및 임퓨테이션 실시 • 조사항목 내검 • 수준분석

□ 입력내검

- 조사표 입력전 내용 검토 및 입력시 전산내검(나라통계 시스템 구축) 실시
 - 전산내검 : 항목값 입력 오류 및 항목간 입력내용 정합성 여부 내검(51개 항목, 134개 논리명)
※ 전산내검 자료 및 내검매뉴얼은 별도 첨부

□ 종합내검(9. 1. ~ 12. 18.)

- 사업체 기본정보 검토 및 유고사업체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최종 유고 여부 결정 및 조사대상 사업체 재조사(행정자료 대체 등) 실시
- 필수오류 사업체 검토(조사항목 누락 사업체, 필수오류 사업체 등)

- 주요 항목별 내검 및 자료처리(이상치 탐색, 증감률 확인 등)
 - 업종별, 업종-지역별 등 범위 점검을 통해 이상치 탐색
 - 비율점검으로 이상치 탐색(전년 대비 증감 등 사유 파악)
 - 이상치 사업체에 대해 전국사업체조사, 행정자료 활용, 인터넷 검색 및 전화질의를 통해 자료 적정성 검토, 자료대체 실시
- 특성항목에 대한 내검실시
 - 산업분류에 따른 특성항목의 적정성 및 조사항목별 특이점 파악
 - 주요 내검 내용

조사항목	내검내용
▷ 영업시간	○ 브랜드대표산업별로 영업시간 항목별 구성비가 5%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체 검토 ○ 체인화편의점업은 “⑤ 14시간 이상”이 아닌 사업체 검토
▷ 정기휴무일수	○ 브랜드대표산업별로 정기휴무일수 항목별 구성비가 5%이하에 해당되는 사업체 검토 ○ 체인화편의점업은 “①휴무일 없음”이 아닌 사업체 검토
▷ 영업개월수	○ 브랜드대표산업별로 6개월 미만 해당사업체 검토(창설연월 참조)
▷ 건물 연면적 (매장 연면적 포함)	○ 브랜드대표산업별 “사업체 건물 연면적 합계” 상·하위 각 5% 해당 사업체 검토 ○ 브랜드대표산업별 “매장 연면적 합계” 상·하위 각 5% 해당 사업체 검토
▷ 객석 수	○ 브랜드대표산업별 객석수 상위 5% 해당사업체 검토 ○ 브랜드대표산업별 “매출액/객석수” 상·하위 각 5% 해당사업체 검토

6. 무응답

6-1 주요 항목무응답 실태

☐ 항목 무응답 발생 여부

- 항목 무응답이 별도로 발생되지 않으며, 단위무응답에서 발생하고 있음
 - 보통 단위무응답 발생 시, 행정자료로 먼저 대체한 후에 대체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항목무응답 대체가 되기 때문에 대체 방법은 단위무응답과 동일함

6-2 항목무응답 대체

- ☐ 항목무응답 발생 유형 : 원칙적으로는 항목무응답을 인정하지 않으나 조사과정 및 자료입력 등에서 발생하는 항목 결측값 및 응답오류에 대하여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위해 단위무응답에 준한 자료처리를 실시함

☐ 조사항목별 대체 방법

▶ 사업체 정기 휴무일수 (공통)

- 전년도 조사된 사업체는 전년과 동일
- 시·도, 브랜드대표산업, 브랜드별로 가장 많이 선택되어 있는 항목을 지정 처리
- 시·도에 사업체가 없으면 전국 단위에서 지정 처리
 - ※ 항목이 동일하면 랜덤(앞뒤) 방식으로 적용

▶ 연간 영업 개월 수 (공통)

- 창설년도(가맹사업 시작연도) < 2019 이면 12개월로 처리
- 창설년도(가맹사업 시작 연도) >= 2019 이면 (13 - 창설 월(가맹사업 시작 월))로 처리

▶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공통)

- 시·도, 브랜드별로 1인당 평균 연간급여액 * 종사자 수
 - ※ 상용 및 임시·일일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만 연간급여액 산출
- 시·도에 사업체가 없으면 전국 단위에서 지정 처리

▶ 사업실적 (공통)

- 시·도, 브랜드별로 각 항목에 대해
 - ① 1인당평균매출액을 구하고
 - ② 비용 구성비(각 항목 전체금액 / 전체 매출액)를 구하여
 - ③ 전체 사업수익 합계(종사자수*1인당평균 매출액)에 ②의 구성비를 적용
 - ※ 조사불응 사업체에 매출액 있으면 사업체 매출액을 적용
 - ※ 사업비용이 0이 아닌 경우만 적용
- 시·도에 사업체가 없으면 전국 단위에서 처리
- 영업비용(차액은 기타영업비용에 적용 및 영업이익 등 계산식이 있는 항목은 합계 재계산)

6-3 단위무응답 실태

□ 단위무응답 실태

- 표본 24,927개 중 불응사업체 330개, 불능(부적격, 폐업 등)사업체 2302개임
- 단위무응답률 10.6% (단위무응답사업체수/표본수*100)
 - 불응비율 : 1.32% (불응사업체수/표본수*100)
 - 불능비율 : 9.23% (불능사업체수/표본수*100)
- 주요 불응사유
 - 국가기관 불신에 따른 통계조사 불응
 - 여러 기관의 잦은 조사에 따른 영업방해, 불이익 초래 주장
 - 대표자 지시(회사방침 등) 및 담당자의 응답거부
 - 국세청에 자료 제출했다며 응답거부
 - 바쁘다, 이유없음, 필요성 없음, 응답의무 없음 등 무조건 조사회피

<프랜차이즈 업종분류별 불응사업체수 및 불응률>

프랜차이즈 업종(분류)명	불응사업체수 (불응률)	프랜차이즈 업종(분류)명	불응사업체수 (불응률)
체인화 편의점	26 (1.8%)	치킨전문점	13 (0.7%)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6 (1.1%)	김밥·간식·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	20 ((1.0%)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7 (5.7%)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22 (1.1%)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0 (1.2%)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30 (1.2%)
한식 음식점업	34 (1.0%)	자동차 전문 수리업	35 (2.2%)
외국식 음식점업	19 (1.0%)	두발 미용업	11 (1.4%)
제과점업	19 (1.5%)	가정용 세탁업	5 (0.7%)
파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16 (0.9%)	기타 프랜차이즈	37 (1.7%)

□ 단위무응답 대체 방안

- 불능사업체는 유고처리하며, 불응사업체에 대해 대체를 실시함
 - (전수업종 및 전수층) 행정자료로 사업실적과 매장면적을 대체한 후에 대체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과거자료를 이용하여 대체
 - 행정자료 대체: 83개 사업체(일부 특성항목의 경우 과거자료로 대체)
 - 전년자료 대체: 22개 사업체(행정자료 미연계 사업체)
 - (표본층) 사후 가중치 조정방법 활용

6-4 오차 검증

□ 오차 검증

- 단위 무응답 발생 시 사후 가중치 조정방법으로 집계하며, 별도의 오차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7. 통계추정

7-1 가중치 조정

□ 단위무응답 대체 현황

- (전수업종 및 전수층) 단위무응답 발생 시, 행정자료로 사업실적과 매장면적을 대체한 후에 대체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과거 자료를 이용하여 대체
- (표본층) 사후 가중치 조정방법 활용

□ 가중값 작성방법

- 사후층 표본수 및 벤치마크 자료를 고려한 층병합
-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사후가중값 작성
- 벤치마크(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사업체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최종가중값 작성

- (작성대상) 부차모집단의 종사자 규모별 전체 1,232개 층 중 최소표본수(3개) 미만인 경우 층을 병합(17개층)

구분(x)	전체	전수 업종	합계	전수층	표본층	표본1층 표본2층		표본층 병합
						표본1층	표본2층	
모집단층수	1,232	16	1,216	409	807	409	398	-
사후층수	1,215	16	1,199	409	790	400	390	17

- (설계가중값) 시도(17개) 및 업종분류(25개)의 종사자 규모(3개) 층별 추출률의 역수로 산출

$$w_{hij} = \frac{N_{hij}}{n_{hij}}$$

h : 시도
 i : 프랜차이즈 업종분류
 j : 종사자수 규모층
 n : 표본크기
 N : 모집단크기

- (사후층화가중값) 모집단의 종사자수 분포에 맞게 조정

$${}_s w_{hij}^{Post} = \frac{{}_s N'_{hij}}{{}_s n'_{hij}}$$

N'_{hij} : 모집단 사업체수
 n' : 조사완료 표본수

- (최종가중값)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 등록 가맹점수를 벤치마크 자료로 활용하여 최종가중값 작성
 - 벤치마크 자료에 시도, 업종 정보는 있으나, 종사자수 정보는 없어 2018년 전수자료

기준 시도별 업종별 종사자 규모층(표본1·2층, 전수층) 비율을 적용하여 벤치마크 실시

$$w_{hij}^{Final} = w_{hij}^{Post} \times \frac{M_{hij}}{N'_{hij}} \quad M: \text{벤치마크모집단 크기}$$

* 전수업종 및 전수층의 경우, 설계모집단 사업체수 < 벤치마크 사업체수이면 최종가중값>1

< 전수층 및 표본1, 2층의 최종가중값 분포 >

	전체	전수층 ¹⁾	표본1층	표본2층
사업체수	22,400	7,249	7,387	7,764
평균	9.6	1.5	18.0	9.3
최솟값	0.6	0.6	0.9	0.7
중위수	5.1	1.4	13.3	5.8
최댓값	167.6	9.2	167.6	96.3
CV	144.8	34.8	100.0	119.6
UWE ¹⁾	2.31	-	2.0	2.4

1) UWE=1+(CV_{weight})²: Unequal Weighting Effect(분산요인; Variance Factor). 표본 자료를 통해 모수를 추정할 때 불균등가중값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정 정도의 손실 측정(Kish, 1992)

* UWE가 2.5이상일 경우 극단가중값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7-2 통계추정 산식 및 내용

□ 모수 추정

○ (사후층 형성) 2020. 8.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기준 등록 가맹점 정보를 보완하여 이를 최신 모집단으로 간주하여 사후층 형성

- 종사자층별 총합 추정 : $\hat{\tau}_{y,hij} = {}_c\hat{\tau}_{y,hij} + {}_s\hat{\tau}_{y,hij}$

$$= \sum_l^{cN'_{hij}} y_{hijl} + \sum_l^{sn'_{hij}} y_{hijl} \times {}_sw_{hij}$$

$$\text{여기서, } w_{hij} = \frac{{}_sn'_{hij}}{{}_sN'_{hij}}$$

- 시도별 총합 추정 : $\hat{\tau}_{y,h} = \sum_i \sum_j \hat{\tau}_{y,hij}$

- 전국 총합 추정 : $\hat{\tau}_y = \sum_h \sum_i \sum_j \hat{\tau}_{y,hij}$

첨자 c : 전수층 사업체
 s : 표본층 사업체
 h : 시도
 i : 산업세세분류
 j : 종사자규모층
 l : 개별사업체

변수 y : 매출액
 T : 총합
 n' : 조사완료 후 표본수
 N' : 모집단수(확정자료)
 w : 사후가중치

8. 표집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표본조사)

□ 분산 추정

- 층별 총합의 추정분산

$$\hat{V}(\hat{y}_{hij}) = \frac{s n'_{hij}(1-f_{hij})}{s n'_{hij} - 1} \sum_l^{s n'_{hij}} (y_{hijl} - \bar{y}_{hij.})^2$$

여기서, $y_{hijl} = s y_{hijl} \times w_{hij}$

$$\bar{y}_{hij.} = (\sum_l^{s n'_{hij}} y_{hijl}) / s n'_{hij}$$

$$f_{hij} = s n'_{hij} / s N'_{hij}$$

- 시도별 총합의 추정분산 : $\hat{V}(\hat{\tau}_{y,h}) = \sum_i \sum_j \hat{V}(\hat{\tau}_{y,hij})$

- 전국 총합의 추정분산 : $\hat{V}(\hat{\tau}_y) = \sum_h \sum_i \sum_j \hat{V}(\hat{\tau}_{y,hij})$

□ 신뢰구간

- 표준오차 : $SE(\hat{\tau}_y) = \sqrt{\hat{V}(\hat{\tau}_y)}$

- 상대표준오차 : $RSE(\hat{\tau}_y) = \frac{SE(\hat{\tau}_y)}{\hat{\tau}_y} \times 100$

- 100(1- α)% 신뢰구간 : $\hat{\tau}_y \pm z_{\alpha/2} SE(\hat{\tau}_y)$

- 90% 신뢰구간일 경우 $\alpha = 0.1$, $z_{\alpha/2} = 1.645$

□ 주요 항목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현황

항목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종사자수	6206.4	0.7%
매출액	873715.1	1.2%
영업비용	873950.1	1.3%
매출원가	684356.4	1.6%
인건비	88264.8	0.9%
임차료	59964.6	1.1%
기타영업비용	214026.5	2.2%
연간급여액	85432.8	0.9%

□ 주요 항목의 오차 특성과 이용 시 고려사항

- $30\% \leq \text{상대표준오차} < 60\%$: 주의사항과 함께 이용 가능,
- $60\% \leq \text{상대표준오차}$: 신뢰도가 매우 낮으니 공표하지 않거나 이용에 주의를 요함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분 류	분류 수준
지 역	전국 및 17개 시도
업 종	체인화 편의점,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전문점, 김밥, 기타 간이 음식점 및 포장 판매점,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커피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기타 프랜차이즈

□ 통계 공표의 적정성 검토 방법

- 통계 공표의 적정성 검토 방법으로는 상대표준오차(RSE)가 있음
 - (판단기준) 30% <= 상대표준오차 < 60% : 주의사항과 함께 이용 가능,
60% <= 상대표준오차 : 신뢰도가 매우 낮으니 공표하지 않거나 이용에 주의를 요함
 - 아래의 표와 같이 모든 항목의 상대표준오차가 30%미만(최대값 8.6)이므로 통계 공표는 적정

<주요 항목 상대표준오차(%)>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기타 영업비용	연간 급여액
합 계	0.7	1.2	1.3	1.6	0.9	1.1	2.2	0.9
체인화 편의점	2.7	3.3	3.5	3.7	2.5	5.2	6.3	2.5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2.1	3.5	3.8	4.2	5.6	4.8	7	5.8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1	4.1	4.2	4.8	3.6	5	6.2	3.8
안경 및 렌즈 소매업	1.4	2.1	2.2	2.9	2.6	2.9	4.3	2.6
한식 음식점업	1.1	1.5	1.6	1.8	2.1	2	3.1	2.1
외국식 음식점업	1.6	2	2.2	2.4	2.3	2.4	4.8	2.3
제과점업	1.7	5.7	6.1	8.6	2.7	3.3	5.7	2.7
피자, 햄버거, 샌드위 치 및 유사 음식점업	1.5	2	2	2.2	2.6	2.8	4.4	2.6
치킨전문점	1.5	2.3	2.6	2.8	4.7	3.7	5.1	4.8
김밥, 기타 간이음식 점 및 포장 판매점	1.7	2.2	2.4	2.6	3.5	3.6	5	3.5
생맥주 및 기타 주점업	1.5	1.8	1.9	2.2	3.3	2.2	3.3	3.4
커피 및 기타 비알코 올 음료점업	1.4	2.1	2.4	3.3	2.4	2.8	4.9	2.4
자동차 전문 수리업	1.3	1.8	2.1	2.4	2.1	4.6	5.7	2.1
두발 미용업	2.6	2.8	3	6.4	4.1	3.2	6.1	4.5
가정용 세탁업	2	4	4.6	7.2	6.4	5.3	7	6
기타 프랜차이즈	2.3	3.3	3.6	4.5	4.5	3.4	5.7	4.7

□ 주요 통계표, 그래프 등, 해석방법 및 이용 시 유의사항

○ 주요 통계표

< 프랜차이즈(가맹점) 주요 지표 >

(단위: 개, 명, 십억원, 백만원, %, %p)

업 종 별	2018년	2019년	증감	증감률(%)
가맹점수(개)	210,099	215,188	5,089	2.4
총사자수(명)	816,420	846,832	30,412	3.7
가맹점당(명)	3.9	3.9	0.0	1.3
매출액(십억원)	68,260	74,620	6,360	9.3
가맹점당(백만원)	324.9	346.8	21.9	6.7
영업비용(십억원)	62,566	67,436	4,870	7.8
가맹점당(백만원)	297.8	313.4	15.6	5.2
매출원가*(십억원)		42,755	42,755	-
인건비(십억원)	8,613	9,823	1,210	14.1
임차료(십억원)	4,465	5,292	827	18.5
기타영업비용*(십억원)	49,488	9,565	-39,923	-
연간 급여액(십억원)	7,755	9,408	1,653	21.3
영업이익(십억원)	5,694	7,184	1,490	26.2
가맹점당(백만원)	27.1	33.4	6.3	23.2
영업이익률(%)	8.3	9.6	1.3	16.0

* 2018년 매출원가는 기타영업비용에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2019년 분리 작성

< 업종별 가맹점수 현황 >

(단위: 개, %)

업 종 별	2018년	2019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업종	210,099	215,188	100.0	5,089	2.4
편의점	41,359	41,394	19.2	35	0.1
문구점	1,688	1,675	0.8	-13	-0.8
의약품	3,632	3,836	1.8	204	5.6
안경·렌즈	3,184	3,169	1.5	-15	-0.5
한식	29,209	30,927	14.4	1,718	5.9
외국식	7,561	7,476	3.5	-85	-1.1
제과점	7,354	7,390	3.4	36	0.5
피자·햄버거	11,576	12,468	5.8	892	7.7
치킨	25,110	25,687	11.9	577	2.3
김밥·간이음식	13,077	13,371	6.2	294	2.2
생맥주·기타주점	11,676	9,965	4.6	-1,711	-14.7
커피·비알코올음료	17,615	18,350	8.5	735	4.2
자동차 수리	7,038	7,044	3.3	6	0.1
두발미용	3,897	3,933	1.8	36	0.9
가정용 세탁	4,575	4,832	2.2	257	5.6
기타	21,548	23,671	11.0	2,123	9.9

< 업종별 종사자수 현황 >

(단위: 명, %)

업종별	2018년	2019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업종	816,420	846,832	100.0	30,412	3.7
편의점	179,096	192,616	22.7	13,520	7.5
문구점	4,571	4,412	0.5	-159	-3.5
의약품	12,173	12,862	1.5	689	5.7
안경·렌즈	9,008	8,985	1.1	-23	-0.3
한식	123,697	126,022	14.9	2,325	1.9
외국식	41,452	39,233	4.6	-2,219	-5.4
제과점	34,989	34,267	4.0	-722	-2.1
피자·햄버거	55,678	60,572	7.2	4,894	8.8
치킨	65,241	66,854	7.9	1,613	2.5
김밥·간이음식	45,900	46,342	5.5	442	1.0
생맥주·기타주점	33,516	28,272	3.3	-5,244	-15.6
커피·비알코올음료	76,842	81,303	9.6	4,461	5.8
자동차 수리	26,895	29,349	3.5	2,454	9.1
두발미용	21,176	21,339	2.5	163	0.8
가정용 세탁	8,490	9,113	1.1	623	7.3
기타	77,696	85,295	10.1	7,599	9.8

< 업종별 매출액 현황 >

(단위: 십억원, %)

업종별	2018년	2019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업종	68,260	74,620	100.0	6,360	9.3
편의점	21,096	23,198	31.1	2,102	10.0
문구점	699	648	0.9	-51	-7.3
의약품	3,796	3,858	5.2	62	1.6
안경·렌즈	1,060	1,054	1.4	-6	-0.6
한식	8,712	9,456	12.7	744	8.5
외국식	2,745	2,859	3.8	114	4.1
제과점	3,073	2,995	4.0	-78	-2.5
피자·햄버거	3,254	3,787	5.1	533	16.4
치킨	4,247	5,288	7.1	1,041	24.5
김밥·간이음식	2,457	2,813	3.8	356	14.5
생맥주·기타주점	2,028	1,806	2.4	-222	-10.9
커피·비알코올음료	3,409	3,845	5.2	436	12.8
자동차 수리	3,168	3,335	4.5	167	5.3
두발미용	980	1,052	1.4	72	7.4
가정용 세탁	442	517	0.7	75	17.0
기타	7,093	8,109	10.9	1,016	14.3

< 업종별 영업비용 현황 >

(단위: 십억원, %)

업 종 별	2018년	2019년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	증감률
전체 업종	62,566	67,436	100	4,870	7.8
편의점	20,321	21,913	32.5	1,592	7.8
문구점	638	587	0.9	-51	-8.1
의약품	3,441	3,588	5.3	147	4.3
안경·렌즈	919	917	1.4	-2	-0.2
한식	7,872	8,351	12.4	479	6.1
외국식	2,432	2,562	3.8	130	5.3
제과점	2,872	2,727	4.0	-145	-5.1
피자·햄버거	2,940	3,339	5.0	399	13.6
치킨	3,640	4,480	6.6	840	23.1
김밥·간이음식	2,176	2,424	3.6	248	11.4
생맥주·기타주점	1,767	1,511	2.2	-256	-14.5
커피·비알코올음료	3,020	3,309	4.9	289	9.6
자동차 수리	2,838	3,017	4.5	179	6.3
두발미용	881	915	1.4	34	3.9
가정용 세탁	366	402	0.6	36	9.9
기타	6,444	7,394	11.0	950	14.7

< 2019년 항목별 영업비용 현황 >

(단위: 십억원)

업 종 별	2019년										연간 급여액
	영업 비용	구성비	매출원가	구성비	인건비	구성비	임차료	구성비	기타	구성비	
전체 업종	67,436	100.0	42,755	63.4	9,823	14.6	5,292	7.8	9,565	14.2	9,408
편의점	21,913	100.0	16,212	74.0	1,812	8.3	850	3.9	3,038	13.9	1,725
문구점	587	100.0	440	75.0	51	8.8	40	6.8	55	9.4	49
의약품	3,588	100.0	2,924	81.5	279	7.8	127	3.5	258	7.2	253
안경·렌즈	917	100.0	506	55.2	166	18.2	135	14.8	109	11.9	158
한식	8,351	100.0	4,502	53.9	1,710	20.5	915	11.0	1,224	14.7	1,671
외국식	2,562	100.0	1,261	49.2	633	24.7	288	11.2	380	14.8	613
제과점	2,727	100.0	1,809	66.3	380	13.9	242	8.9	296	10.8	373
피자·햄버거	3,339	100.0	1,837	55.0	648	19.4	303	9.1	551	16.5	629
치킨	4,480	100.0	2,952	65.9	456	10.2	370	8.3	701	15.7	438
김밥·간이음식	2,424	100.0	1,314	54.2	456	18.8	285	11.8	369	15.2	445
생맥주·기타주점	1,511	100.0	811	53.7	271	17.9	211	13.9	218	14.4	266
커피·비알코올음료	3,309	100.0	1,452	43.9	781	23.6	532	16.1	544	16.4	759
자동차 수리	3,017	100.0	1,630	54.0	778	25.8	133	4.4	476	15.8	737
두발미용	915	100.0	222	24.3	319	34.8	145	15.9	229	25.0	280
가정용 세탁	402	100.0	155	38.5	65	16.1	58	14.4	125	31.0	57
기타	7,394	100.0	4,727	63.9	1,017	13.8	656	8.9	994	13.4	956

< 업종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현황 >

(단위: 십억원, %, %p)

업종별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2018년	2019년	증감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	증감률
전체 업종	5,694	7,184	1,490	26.2	8.3	9.6	1.3	16.0
편의점	775	1,285	510	65.8	3.7	5.5	1.8	49.7
문구점	62	61	-1	-1.1	8.8	9.5	0.7	7.5
의약품	355	270	-85	-23.8	9.4	7.0	-2.4	-25.4
안경·렌즈	141	137	-4	-2.8	13.3	13.0	-0.3	-2.2
한식	841	1,105	264	31.4	9.6	11.7	2.1	21.7
외국식	313	297	-16	-5.1	11.4	10.4	-1.0	-8.9
제과점	200	269	69	34.3	6.5	9.0	2.5	37.9
피자·햄버거	314	448	134	42.6	9.7	11.8	2.1	21.9
치킨	607	808	201	33.1	14.3	15.3	1.0	6.8
김밥·간이음식	282	389	107	37.9	11.5	13.8	2.3	20.2
생맥주·기타주점	261	295	34	13.1	12.9	16.3	3.4	26.7
커피·비알코올음료	388	536	148	38.1	11.4	13.9	2.5	22.2
자동차 수리	331	317	-14	-4.1	10.4	9.5	-0.9	-8.5
두발미용	99	137	38	38.5	10.1	13.0	2.9	29.0
가정용 세탁	76	115	39	51.2	17.2	22.2	5.0	29.2
기타	649	716	67	10.3	9.1	8.8	-0.3	-3.0

<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주요지표 >

(단위: 개, 명, 십억원, %)

지역별	가맹점수 (개)	구성비	종사자수 (명)	매출액 (십억원)	영업비용	매출 원가	인건비	임차료	기타비용	영업이익	영업 이익률
전체	215,188	100.0	848,027	74,620	67,436	42,755	9,823	5,292	9,565	7,184	9.6
서울	40,615	18.9	180,906	15,501	14,227	8,401	2,362	1,526	1,937	1,273	8.2
부산	13,558	6.3	53,147	4,251	3,827	2,381	597	317	532	424	10.0
대구	9,456	4.4	34,566	2,784	2,455	1,540	370	202	343	329	11.8
인천	11,482	5.3	49,127	4,423	3,983	2,602	592	302	486	440	9.9
광주	6,234	2.9	24,393	2,138	1,903	1,266	271	143	223	235	11.0
대전	6,415	3.0	25,232	2,049	1,861	1,187	261	133	281	188	9.2
울산	5,258	2.4	17,917	1,627	1,462	971	194	101	196	165	10.1
세종	1,463	0.7	5,536	483	432	256	69	36	70	51	10.6
경기	54,586	25.4	229,492	20,872	19,061	11,998	2,713	1,470	2,880	1,811	8.7
강원	7,509	3.5	25,694	2,489	2,242	1,485	275	115	368	247	9.9
충북	7,116	3.3	24,376	2,192	1,910	1,254	266	121	268	282	12.9
충남	9,636	4.5	33,836	3,118	2,783	1,800	367	172	444	335	10.7
전북	7,060	3.3	25,625	2,138	1,897	1,253	272	113	260	241	11.3
전남	6,488	3.0	22,540	2,050	1,831	1,255	228	87	261	219	10.7
경북	10,248	4.8	33,898	3,083	2,747	1,888	342	162	356	336	10.9
경남	14,776	6.9	48,940	4,257	3,730	2,515	495	236	484	527	12.4
제주	3,288	1.5	12,801	1,166	1,085	704	150	54	177	81	6.9

○ 공표통계 이용 시 유의사항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현황』 자료와는 작성목적 및 방법, 포괄범위 등이 달라 가맹점수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프랜차이즈 조사(통계청)	가맹거래현황(공정거래위원회)
목적 및 방법	(목적)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를 통한 프랜차이즈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방법) 현장조사(행정자료 보완)	(목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작성
통계 작성범위	· '19년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및 '19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파악된 사업체 ※ 교육서비스업, 콜택시, 군부대 내 가맹점 제외, 주소불명 등 불포함	·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가맹본부, 직영점, 가맹점 ※ 가맹사업법 상 적용배제, 등록거부 및 취소된 경우 제외
작성내용	· 가맹점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 평균사업기간 등
통계의 종류	· 국가승인통계	· 행정자료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일종의 사업설명서로 재무현황, 가맹점수, 영업조건 등을 기재

- 2018년 자료는 전수조사 결과이며 2019년 자료는 표본조사 결과로 작성 방법이 변경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조사대상 시점(또는 기간)과 공표시기

- 조사대상 기간 : 2019. 1. 1. ~ 12.31.(1년간)
- 조사실시 기간 : 2020. 7. 6. ~ 8.14.(40일간)
- 공표시기 : 12월말(잠정)

□ 조사과정별 소요되는 시간

구 분	추진 내용	일정	소요일수
1. 조사준비	· 조사항목·품목 확정 및 조사표 설계	1~3월	3개월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제작·배부	4~5월	2개월
	· 조사요원 모집 및 교육	5월	1개월
	· 조사대상 명부 확정	5월말	
↓			
2. 본조사	· 조사실시	7.6~8.14.(40일간)	1.5개월
↓			
3. 자료처리	·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7. 6.~8.21.	1.5개월
↓			
4. 종합내검	· 본청 종합내검	8~12월	4개월
↓			
5. 결과공표	· 잠정(확정)결과 공표 · 보고서 발간	12월~익년1월 익년 2월	1개월

☐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 결과

- 현재, 행정자료 활용 확대로 행정자료 수집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공표범위 세분화로 내검이 증가하고 있어 공표기간 단축은 어려움

2-2 공표일정

☐ 사전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 준수

- 공표 방법 : 보도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 수록
- 공표 시기 : 잠정발표 2020년 12월말
- 포털 서비스(확정발표) : 2021년 1월
- 보고서 발간 : 2021년 2월
- 공표계획 공개 방법 : 통계청 홈페이지 공개

3. 비교성 및 일관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 작성방법 동일 기준 적용 여부 및 변경 내역

- 2018년 기준 조사는 전수조사(210천개 사업체), 2019년 기준 조사부터는 표본조사(25천개 사업체)로 변경
- 이외의 조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3-2 시계열 비교성

- 특이한 시계열 단절 없음

3-3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공정위 가맹거래현황 및 산업부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비교

	프랜차이즈조사 (통계청)	가맹시장현황 (공정거래위원회)	프랜차이즈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목적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를 통한 프랜차이즈 구조 및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본부(직영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방법	현장조사(행정자료 보완)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작성	현장조사(행정자료 보완)
전수/표본	표본조사(가맹점 25천개)	전수조사	표본조사(가맹본부·직영점 800개, 가맹점 1,200개)
조사주기	매년	매년	3년
조사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및 전국사업체조사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으로 파악된 사업체 ※ 교육서비스업 , 콜택시, 군부대 내 가맹점 제외, 주소불명 등 불포함	가맹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된 가맹본부, 직영점, 가맹점 ※ 가맹사업법 상 적용배제, 등록거부 및 취소된 경우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자료 상 가맹본부, 직영점 및 가맹점 ※ 교육서비스업 등 포함
조사항목	가맹점수, 종사자수, 매출액 등 주로 정량적 항목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수, 평균 사업기간 등 주로 정량적 항목	창업 현황(창업동기 등), 사업 경영 관련,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 주로 정성적 항목
공표범위	전국 및 시도	전국	전국
통계의 종류	국가승인통계	행정자료	미승인 통계

- 프랜차이즈실태조사(산업부)는 프랜차이즈산업의 규모, 해외진출, 상생협력, 가맹본부·가맹점 운영현황 등 전반적 실태파악을 주목적으로 하여 정성적 항목 위주로 조사함
※ 가맹거래현황(공정거래위원회)은 통계가 아닌 행정자료 기반 집계자료임

3-4 잠정치와 확정치의 일관성

□ 잠정치와 확정치간 차이 발생

- 내검결과 변동사항 발생 및 정보공개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통한 사후모집단 수정에 따라 잠정치와 확정치 간 차이 발생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비교>

	잠정(A)	확정(B)	차이*(B-A)	(변동율, %)
가맹점수(개)	215,587	215,188	-399	-0.2
종사자수(명)	848,027	846,832	-1,195	-0.1
매출액(십억원)	74,213	74,620	407	0.5
가맹점당 종사자수(명)	3.9	3.9	0	0.0
가맹점당 매출액(백만원)	344.2	346.8	3	0.7

4. 접근성 및 명확성

4-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 이용자서비스 경로, 경로별 제공자료 유형

- KOSIS(국가통계포털) : 통계 DB
 - <http://kosis.kr>
- 통계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4-2 연락처 정보

☐ 담당자 및 연락처

- 담당자 및 연락처 : 산업통계과 7급 오OO / 042-481-6984

4-3 통계 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소재 정보

- 통계설명자료 DB : <http://meta.narastat.kr>
- KOSIS(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설명자료

5.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및 서비스

5-1 마이크로데이터 생성·관리

☐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방법

- 조사결과 입력·내용검토의 단계에서 조사오류, 입력오류 및 논리오류 등이 수정되어 자료의 영구 보존 및 서비스를 위해 최종 마이크로데이터가 생성되며, 파일설계서 사항을 준수하여 나라통계시스템에서 MDIS로 DB 이관
- 최종 마이크로데이터 생성 조건
 - 집계표 등 공표자료의 MD 집계수치가 일치
 - 응답자 식별 가능한 모든 조사항목도 포함하나 외부는 미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관리 방법

- 일반이용자: 응답자가 식별되거나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된 자료형태인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MDIS 통해 공개
 - 파일설계서, 코드내역서, 조사개요 등 함께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는 산업통계과 및 마이크로데이터에서 직접 보유하고 관리

5-2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요구 및 제공 방법

- 요구 방법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시스템(<http://mdis.kostat.go.kr>)에서 요구
- 제공 방법
 - MDIS(추출) :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kostat.go.kr)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무료로 직접 추출
 - RAS(원격접근) : 이용자가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통계청의 원격접근시스템에 접속하여 인가된 마이크로데이터 통계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
 - RDC(이용센터) : 이용자가 통계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통계 분석 작업을 수행하고, 통계청이 분석 결과에 대하여 비밀보호 의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제공
 - 주문형서비스 : 통계작성용 가구/사업체명부 서비스, 사망원인통계자료 연계서비스 등 이용자 요청에 특화된 서비스

□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

- 소요시간 : 요구 자료에 따라 다름(평균 2~3일 소요)
- 소요비용 : 요구 자료 용량 및 제공방법에 따라 다름
 - 서비스별 소요비용
 - MDIS : 무료
 - RAS : (종량제) 기본료(20,000원/1MB) + 추가수수료,
(정액제) 이용기관 규모에 따라 산정, 1년 이용가능
 - RDC: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
 - 주문형서비스 : 요청 건 구간별 별도 산정

□ 제공자료 포맷 및 레이아웃

- MDIS 사이트의 <데이터 이용>의 <추출·다운로드>에서 관련 데이터 포맷 및 레이아웃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관련 규정

-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통계청 훈령 제 489호)
- 인가된 통계기초자료 이용규정(통계청 예규 제 190호)
-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통계청 예규 제 191호)
 -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 정책정보 > 법령정보에서 이용 가능

6. 비밀보호 및 보안

6-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응답자 비밀보호 관련 규정

- (자료수집)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보존용 자료 비밀보호)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통계청 예규 제 191호) 제14조(자료의 비밀보호)
 - ①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개인이나 사업체의 비밀이 노출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용을 허가한다.
 - ②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이용항목 등이 비밀보호에 위배되는 경우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의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이용목적에 따른 이용항목만을 이용한다.
 - ④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임의로 자료의 수정, 삭제, 추가, 삽입 등을 할 수 없다.
 - ⑤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 직원은 자료 이용 시 이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명시된 이용자준수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6-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의 응답자 비밀보호

- 집계자료 중 사업체가 2개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비밀보호를 위해 사업체 수 이외의 모든 항목에 대하여 「×」 표시를 하여 제공
- 각 통계조사 간 연결 key 값 제공은 불가능
 - 조사 시점 및 기준, 개념 등의 차이로 인한 자료 불일치에 대한 혼란 방지

6-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유실, 유출, 훼손 등 관련 규정

-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 및 이용지침(통계청 예규 제191호)
 - 제8조(보존용 자료의 복제)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보존용 자료를 인수하는 즉시 자료소산을 위해 2부 이상 복제하여 보관한다.
 - 제9조(보존용 자료의 소산) ①자료제공부서의 장은 불의의 재난이나 화재를 대비하여

복제된 보존용 자료를 통계청 본부 이외의 장소에 소산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존용 자료의 소산은 별도의 전산수록매체(LTO 등)에 따른 소산과 원격지 재해복구 시스템에 따른 소산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전산수록매체에 따른 소산은 창원자료관리센타 등에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원격지 재해복구 시스템에 따른 소산은 보존용 자료 인수 즉시 국가 기간 정보시스템 공동백업센터에 실시한다.
 - 제11조(관리대장기록유지) 자료제공부서의 장은 보존용 자료의 인수, 복제, 소산 등 자료의 변동 사항을 보존용 전산자료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 유지한다.
 - 제15조(자료의 무분별한 복제 방지) ①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의 직원은 자료제공부서의 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자료를 전산매체에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PC등에 파일로 저장 보관할 수 없다.
- ② 자료이관기관 또는 통계청의 직원은 자료제공부서의 장의 사전허가를 득하여 복제하거나 PC 등에 파일로 저장하여 사용할 때에는 사용 후 즉시 폐기하고, 그 결과를 자료제공부서에 통지한다.
 - 제16조(자료의 유출방지) 보존용 전산자료는 자료 소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등 자료제공부서장의 사전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될 수 있다.
 - 제17조(자료보관실의 보안) 자료보관실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통계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모든 보안대책을 시행한다.

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프랜차이즈조사 담당 부서 및 인력

- 부서명 : 통계청 산업통계과 (프랜차이즈조사팀)
-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직급	구체적인 통계업무	근속년수(년)	통계업무기간	업무관련 전공여부
과장	산업구조통계 총괄	20년 이상	20년 이상	○
5급	기획·분석·결과공표	20년 이상	20년 이상	○
7급	기획·행정, 자료처리·결과분석·보고서발간	4년	0~1년	○

* 표본설계는 표본과 협조

- 최근 1년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수한 통계관련 교육과정

직급	교육구분	과정명	교육기관	참여인원수
7급	통계전문교육	2021년 실시간 화상교육 제1기 국가통계실무(통계작성·공표 등)	통계교육원	39명

2. 사업예산

☐ 프랜차이즈 조사 예산: 692,222천원

예산 세부내역	2020년 예산
일용임금	181,507
일반수용비	397,852
공공요금	21,450
임차료	50,950
국내여비	18,814
업무추진비	2,500
고용부담금	19,149